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징수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제명 및 해당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- 「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→「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
- 관련 조문 변경
 - 국민건강보험료→「국민건강보험법」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(안 제1조)
 - 보험료→ 국민건강보험료 (안 제2조 및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- 저소득계층 보험료지원 조례개정 협조 공문
(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-957 <2008.4.18>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지원해 주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 범위를 「국민건강보험료」에서 「국민건강보험료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」를 추가 지원하고
- 이와 관련하여 제명을 변경하면서 「보험료」를 「국민건강보험료」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장기요양보험료(국민건강보험료의 4.05%)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됨